

1. 개정이유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및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이 2024. 5.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에 따른 등록원부 정비(안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별지 제8호~제10호, 제12호~제13호 서식)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에 따라 유사 상표의 공존 사실을 공시 수단인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함

나. 국제등록상표기초권의 분할 인정에 따른 등록원부 정비(안 제38조, 별지 제30호 서식 신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표분할 등록방법의 정비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관한 미비사항 개선(안 별지 제15호, 제23호, 제26호 서식)

1) 지정상품 가산금 기재요령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사항(기존 20개에서 10개로 변경)을 반영

2)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 참조번호의 오기 사항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월중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한 자의 등록상표
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의 등록상표번호

제31조제2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한 자의 등록상표
번호

너.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의 등록상표번호

제37조제1항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번호

제38조의 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방법)”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93조제1항”을 “「상표법」 제9

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으로,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할이전”을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으”를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분할이전되는”을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분할이전되는”을 각각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으로 한다.

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번호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번호		제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 장 일 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 장 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출 원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 록 결 정 (심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재출원의특례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중복국내상표권의취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국제등록번호							
	상표권의취지							
	상표의설명							
	비시각적상표의시각적표현							
	「상표법」제33조제2항해당여부의표시							
	상표권설정등록일	년	월	일	등록공고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지정상품	제류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시의 공존상표권 등록번호							
비엔나분류코드								
상표권 분할이전 (뒤쪽 참조)								
상표권 분할 (뒤쪽 참조)								

[상표등록료란]

--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등록사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록사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록사항

[상표첨부란]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국제상표등록원부

국제등록번호	제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장일자	년 월 일	
		주장 수		
		주장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등 록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 록 결 정 (심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중 복 국 제 등 록 기 초 상 표 권 의 취 지			
	중 복 국 내 상 표 권 의 등 록 번 호			
	상 표 권 의 취 지			
	상 표 의 설 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 당 여 부 의 표 시			
	상 표 권 설 정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공고연월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지 정 상 품	제 류 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시의 공존 상표권 등록 번 호			
비 엔 나 분 류 코 드				
상표권 분할이전(뒤쪽 참조)				

[상 표 권 자 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국제등록사항기재란]

기재번호	등 록 사 항

[상표첨부란]

--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4호”
를 “제15호”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4) 중 “한다”를 “합니다”로 하고, 같은 뒤쪽 다목
중 “20개”를 “10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

상표등록번호	제 호	분할이전번호	제 호
--------	-----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 장 일 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 장 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출 원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 록 결 정 (심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재 출 원 의 특 례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중 복 국 내 상 표 권 의 취 지							
	중 복 국 제 등 록 기 초 상 표 권 의 국 제 등 록 번 호							
	상 표 권 의 취 지							
	상 표 의 설 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 당 여 부 의 표 시								
상 표 권 설 정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공고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분 할 이 전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					
지 정 상 품		제 류 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 시의 공존 상표권 등록번호								
비 엔 나 분 류 코 드								

[상표등록료란]

--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첨 부 란]

--

상표등록원부(분할)

상표등록번호	제	호	분할번호	제	호
--------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 장 일 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 장 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출 원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재 출 원 의 특 례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중복국내상표권의 취지						
	중 복 국 제 등 록 기 초 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상 표 권 의 취 지						
	상 표 의 설 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 당 여 부 의 표 시							
상 표 권 설 정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공고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분 할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					
지 정 상 품		제 류 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시의 공존 상표권 등록 번 호							
비 엔 나 분 류 코 드							

[상표등록료란]

--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상표첨부란]

--

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

국제등록번호	제 호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국 제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사 후 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장일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 장 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중복국제등록기초 상표권 의 취 지						
	중 복 국 내 상 표 권 의 등 록 번 호						
	상 표 권 의 취 지						
	상 표 의 설 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당 여 부 의 표 시							
상 표 권 설 정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공고일	년 월 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분 할 이 전 등 록 일		년 월 일					
지 정 상 품		제 류 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시의 공존 상표권 등록 번 호							
비 엔 나 분 류 코 드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국제등록사항기재란]

기재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첨 부란]

--

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

국제등록번호	제 호	분할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국 제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사 후 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우 선 권	상품류 구분	제 류	
		주장일자	년 월 일	
		주장 수		
		주장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상 품 류 구 분 수			
	중복국제등록기초 상표권 의 취 지			
	중 복 국 내 상 표 권 의 등 록 번 호			
	상 표 권 의 취 지			
	상 표 의 설 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당 여부 의 표 시			
	상 표 권 설 정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공고일	년 월 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분 할 등 록 일	년 월 일		
	지 정 상 품	제 류 지정상품		
	설정등록 또는 변동등록 당시의 공존 상표권 등록번호			
	비 엔 나 분 류 코 드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국제등록사항기재란]

기재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첨 부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파. (생략) <u><신설></u> <u><신설></u> 3. ~ 6. (생략) ② (생략)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u>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한 자의 등록상표번호</u> 거. <u>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번호</u> <u>호</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 -----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
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하. (생략)

<신설>

<신설>

3. ~ 5. (생략)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
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
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
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
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
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한 자
의 등록상표번호

너.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
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
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번
호

3.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
등록의 방법)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타.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 할이전등록방법) ①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 나 부착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u>분할이전</u>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 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 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 번호 2. <u>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u>란: <u>분 할이전</u>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u>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u> <u>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u> <u>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u> <u>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u> <u>번호</u>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 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 법) ① -- 「상표법」 제93조제 1항 및 제94조제1항----- ----- 하거나 분할등록 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 -----. 1. ----- <u>분할이전</u> 또 <u>는 분할</u>----- ----- ----- -- 2. <u>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 할국제등록번호</u>란: <u>분할이전</u> <u>또는 분할</u>--
--	--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바. (생략)

사.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는 지정상품

아. ~ 카. (생략)

타. 분할이전등록 연월일

파. (생략)

<신설>

4.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
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
표권의 설정등록 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생략)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

아. ~ 카. (현행과 같음)

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
등록의 연월일

파. (현행과 같음)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
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
번호

4. ~ 6. (현행과 같음)

② -----

-----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

-----.

1. (현행과 같음)

2. ----- 분할이전되

는 지정상품	거나 분할되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